

이석주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자유한국당)

1. 최근 3년간 (201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위촉 현황 및 구성 명단 제출 요망
2.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심의위원인 시의원이 출신지역 안건 심의 때 기피를 요청해야 하는 정확한 법 규정상 근거와 법령은?
3. 2017. 8. 16 제14차 도계위에서 6번째 안건인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심의에 대한 회의 진행 속기록 사본 일체 송부 요망
4. 2030 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에서 도심, 광역 및 지역지구 중심의 세부 위치가 결정 되지 않았을 경우에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나 한강변 관리기본 계획상의 높이계획기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5. 생활권 계획 중 지역별 특화전략편에 MICE 산업벨트가 (삼성-잠실-학여울)로 계속 서면화되고, 관계부서 협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금회 학여울을 뺀 특별한 사유
6. 최근 지역 (학여울 주변) 주민 6,000여명의 집단탄원서 요점은 무엇이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상세 답변 요망

□ 의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근 3년간 (201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위촉 현황 및 구성 명단

※ 명단 별첨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위원인 시의원이 출신지역 안건 심의 때 기피를 요청해야 하는 정확한 근거와 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해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는 인정되는 경우 해당안건 심의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72호, 2013.11.27.)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 회피 제도' 운영 강화
- 시의원 위원 해당지역구 소재 안건 및 직무와 직접 관련된 안건 회피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소관 상임위 위원회 참여 제한 권리

- ‘도시계획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 (‘12.10.8)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제외 권고
- 위원회 운영 관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요청 (‘13.4.16)
 - 집행기관의 위원회 운영시 상임위 소속 지방의원을 위촉한 경우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심의·의결을 회피

참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제척 · 회피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 ·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 · 경영 등에 대한 자문 · 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8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3. 2017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관련 속기록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 제6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4. 2030 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에서 도심, 광역 및 지역지구 중심의 세부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의 높이계획기본원칙에 적용할 수 있는지

- 생활권계획 수립 이전에도 도시계획상 중심지인 도심, 광역·지역·지구중심 등 중심지의 위치는 4대문 안 등 지리적 구분, 상업지역·준주거지역과 같은 고밀·복합 용도지역의 면적인 지정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등을 통해 판단되어 왔음
 - 개별 토지의 중심지 포함여부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중심지 확장 타당성 · 필요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
- 금번 생활권계획 상 중심지 범역 설정은 중심지의 위치를 새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간의 중심지 판단을 기본으로 하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이를 도면의 형태로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생활권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중심지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과 높이관리기준 적용은 가능함

6. MICE 산업벨트 관련

- '16.10월 계획(안) 수립 시 삼성~잠실~학여울 일대를 MICE 산업벨트로 검토한 바 있으나, SETEC 부지 및 그 일대 개발에 대한 우리시 정책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반시민에게 계획(안) 공개 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7.5월 공청회(안)은 MICE산업벨트에 학여울을 포함하지 않았음
- 다만 SETEC 부지는 현재 전시·컨벤션 시설이 입지되어 있고, MICE산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MICE산업벨트 조정을 검토 중에 있음

8. 주민 집단탄원서 요점 및 처리내용 (17.7.27. 민원접수)

- 민원인 : 미도·은마·우성1차·쌍용1,2차 아파트 주민 5,601명
- 민원요점 : 세텍부지 일대를 강남도심 범위에 포함 요구
- 처리내용 : 세텍부지 일대는 현재 설정된 도심범위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심으로서 중심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강남도심 범위에 세텍부지 일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세부 민원회신내용은 붙임 참조

-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명단(2015~현재) 1부.
2. 주민 집단탄원서 민원 회신내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준형 김창환 정성국
	☎ 2133-8312 ☎ 2133-8324 ☎ 2133-8245	담당자	이나래 정성훈 권혜진
			작성일 : 2017. 8. 31.

2015.1.1. 현재

연번	직 책	성 명	현 직	분야	비고
1	위 원 장	이건기	행정2부시장(임명직)	시공무원	
2	위원(내부)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임명직)	시공무원	2015.01.01 위촉
3	"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임명직)	시공무원	2015.01.01 위촉
4	"	류 훈	도시계획국장(임명직)	시공무원	2015.01.01 위촉
5	위원(시의원)	김 기 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원	
6	"	김 인 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원	
7	"	남 창 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원	
8	"	박 준 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원	
9	"	이 승 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원	
10	위원(외부)	강병근	건국대 건축설계학과 교수	도시건축	
11	"	윤명오	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도시방재	
12	"	김홍남	전) 국립민속박물관장	문화예술	
13	"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계획	
14	"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도시설계	
15	"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	도시설계	
16	"	정석	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마을공동체	
17	"	서채란	서채란법률사무소	법조인	
18	"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계획	
19	"	이경훈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도시건축	
20	"	김영종	종로구청장	구청장	
21	"	장영희	SH 도시연구소장	주택정책	
22	"	최 막 중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경 관	
23	"	이정형	중앙대 도시설계학 교수	경 관	
24	"	남 기 범	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경 제	
25	"	안 창 모	경기대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문화(역사)	
26	"	윤 순 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환경	
27	"	손 봉 수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교 통	
28	"	윤 혁 렐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교 통	

29	"	이 규 연	중앙일보 논설위원	언론인	
----	---	-------	-----------	-----	--

수신 선우명석외 5,600명(062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귀한 의견을 주신 선우명석외 미도·은마·우성1차·쌍용1·2차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텍부지 일대를 도심범위에 포함하도록 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2014년 「203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 개편으로 종전의 1도심에서 3도심 체계로 조정되면서 영동부도심이 강남도심으로 중심지 위계가 상향되었고, 이번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는 지역별 업무·상업 등 토지이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중심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심지로 육성해야 할 도심범위를 제시하였으며,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강남도심의 경우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역삼로, 도산대로 등을 경계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3. 주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세텍부지 일대는 현재 설정된 도심범위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심으로서 중심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텍부지 일대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 생활권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절차를 진행중으로 향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금년말까지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생활권계획추진반(담당자 권혜진☎ 2133-8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석주 의원(도시관리위원회, 자유한국당)

질문 5)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2015고시) 중 높이계획기본원칙에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에 특별히 높이완화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특별히 높이완화가 필요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설명 요함.

의원님 질문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25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페이지 228)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지정 등으로 인해 특별히 높이완화가 필요한 경우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제2조 제18호』에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라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히 높이완화가 필요한 경우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경우”라 할 수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창규
	☎2133-7167	주무관	이승우
	작성일 : 2017. 8. 31.		

이석주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자유한국당)

□ 질문내용

대치 세텍개발 관련 용역을 수차례씩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까지 언제 몇차례 했으며 결과는 어떠했는지 일자와 요점 그리고 향후계획 답변 요망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립니다.

- 최근 전시장은 대형화 · 글로벌화 추세이며 서울 전시컨벤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텍을 국제전시회 개최 가능한 시설로 복합개발 하고자 적정 개발 규모·방식 등 확정을 위해 용역을 실시 하였음.

(관련법률 : 민간투자법 제8조의 2 및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제65조)

- 또한, 3차례 실시한 용역은 중복 또는 개별적인 용역 아니라 세텍부지 복합 개발을 위한 일련의 진행과정으로서 최적의 세텍개발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임.

- 그동안 추진했던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용 역 명		
	SETEC부지MICE콤플렉스조성 타당성조사및 기본계획수립용역	SETEC일대 연계 복합개발방안수립연구용역	SETEC복합개발 타당성및 적격성 분석용역
용역 기간	'13. 3 ~ 6월(3개월)	'15. 4 ~ 12월(8개월)	'16.9~'17.5월(10개월)
용역 금액	75,645 천원	370,000 천원	263,610 천원
용역 업체	PD그룹 및 2개사	PD그룹, 도하, 간삼	서울공공투자센타
용역 결과	MICE수요및 타당성 조사 (기초조사)	산업.경제성분석 도시계획/교통.환경 사업성 추진전략 (구상용역)	재무.경제성분석 타당성및 적격성심사 분석 완료

-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방식 · 규모등에 대하여 TF팀을 구성 관련부서 협의 및 내부검토 진행 중으로 '17. 9월 ~ 10월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후속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임. 끝.